

福祉施設避難マニュアルの効果と グループホーム火災

- 病院・診療所等や社会福祉施設等において、三要素(建築的要素、設備的要素、人的要素)を組み合わせる必要な防火安全性能を確保する考え方が全国的に普及し、大きな効果
- マニュアル作成時に想定していなかった長崎県のグループホーム火災(平成18年(2006年))により新たな対応の必要性

39

복지시설 파난 매뉴얼의 효과와 그룹홈의 화재

- 병원·진료소등 및 사회복지시설등에서 3요소(건축적요소, 설비적요소, 인적요소)를 조합하여 필요한 방화안전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효과가 매우 큼
- 매뉴얼 작성시 예상치 못한長崎県の 그룹홈화재(2006년)에 의해 새로운 대응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됨

40



消防庁では大村市の火災(平成18年)以前からグループホームの火災危険に気づき、厚生労働省の担当者も入れた委員会を作って検討していた。

長崎県 大村市グループホームやすらぎの里火災

平成18年1月18日



소방청에서는大村市の 화재(2006년) 이전으로 부터 그룹홈의 화재위험을 인식하여 후생노동성의 담당자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회를 조직하여 검토하였다.

長崎県 大村市그룹홈 やすらぎの里 화재

2006년 1월18일

42

・2006年1月8日 午前2時25分

・共用室居間のソファ付近で出火。ライターによる着火の可能性が高い。初期消火は消火器で行い失敗、断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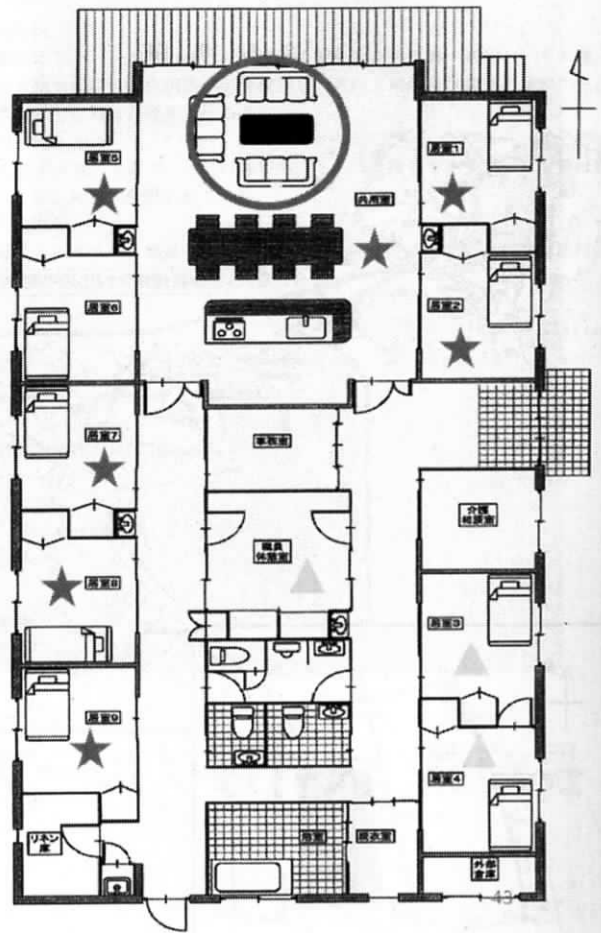
・建築用途: 高齢者福祉施設

・RC造一部木造平屋建て、築3年

・延床面積279㎡、焼損面積279㎡(全焼)

・死者7名、負傷者3名(うち職員1名)

・消防用設備等は、消火器、誘導灯のみ。小規模高齢者福祉施設だったため、当時の基準では他の設備を付けなくても違法ではなかった。



・2006年1月8日 오전2시25분

・공용실거실의 소파부근에서 출화. 라이터에 의한 착화가능성이 높음. 초기소화는 소화기로 행하였으나 실패하고 단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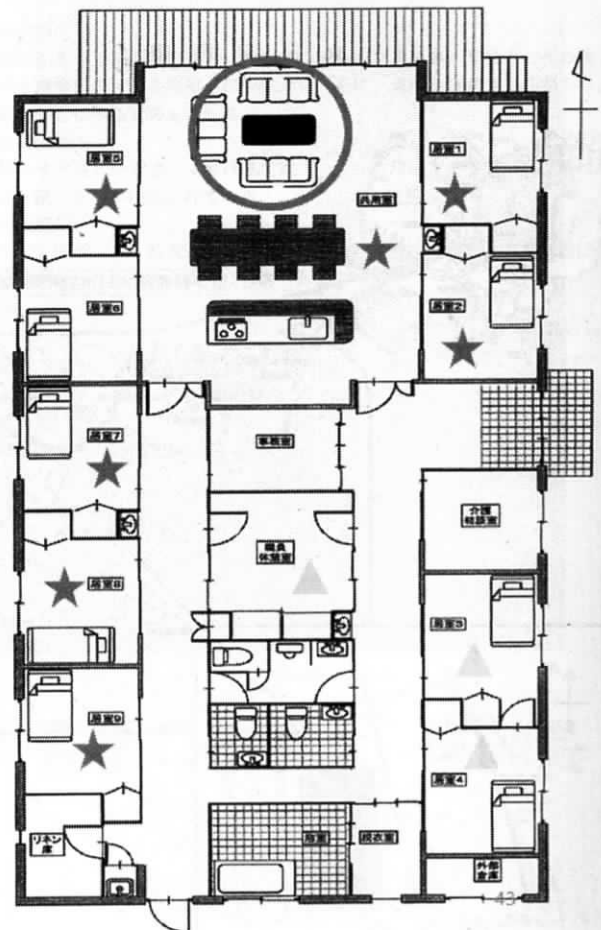
・건축용도: 고령자복지시설

・RC조 일부 목조 단층, 신축후 3년

・연바닥면적 279m2, 소손면적 279m2(전소)

・사망자 7명, 부상자3명 (중 직원 1명)

・소방용설비등은 소화기, 유도등 만 있었음. 소규모 고령자복지시설이었기 때문에 당시기준으로서는 다른 설비가 없어도 법에 위배되지 않음.



長崎県の認知症高齢者グループホーム 火災(7人死亡 平成18年(2006年)1月)に伴う 消防法施行令の改正(平成19年(2007年)6月)

- 福祉施設等の中でも特に火災危険性の高い施設を令別表6項(口)として独立
- スプリンクラー設備の設置基準の拡大
1000m²以上 → 275m²以上
- 自動火災報知設備・消防機関へ通報する火災報知設備・消火器等の設置基準における面積要件の撤廃
- 防火管理義務対象物の拡大
- 「特定施設水道連結型スプリンクラー設備」の採用

45

長崎県の 인지증 고령자 그룹홈 화재(7인 사망 2006년 1월)에 따른 소방법 시행령의 개정(2007년 6월)

- 福祉施設等の中でも特に火災危険性の高い施設を令別表6項(口)として独立
- 복지시설등의 중에서도 특히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설을령별표 6항(口)으로서 독립
- 스프링클러設備の設置基準の拡大
-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기준의 확대
1000m²이상 → 275m²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소방기관으로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소화기등의 설치기준에 면적요건의 철폐
- 방화관리 의무 대상물의 확대
- 「특정시설수도연결형 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

46

(6) 項口でスプリンクラー設備を設置することを 要しない防火区画(消防法施行規則第12条の2)

延べ面積	1000㎡未満	1000㎡以上
居室の床・壁の区画	準耐火構造	耐火構造
内装制限	通路は準不燃、その他は難燃	同左
開口部の広さ制限	1カ所4㎡、計8㎡以下	同左
開口部の防火設備	防火戸(常閉or煙感連動閉鎖)	特定防火設備である防火戸 (常閉or煙感連動閉鎖or開放 部分の4㎡以内の鉄製網入り ガラス入り戸)
一区画の床面積	100㎡以下	200㎡以下
一区画の居室数	3以下	制限なし

47

(6) 항로에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필요로하지 않는 방화구획(소방법시행규칙 제 12조의 2)

연면적	1000㎡ 미만	1000㎡ 이상
거실의 바닥, 벽의 구획	준내화구조	내화구조
내장 제한	통로는 준불연, 그외는 난연	동일
개구부의 넓이 제한	1개당 4㎡, 합계 8㎡ 이하	동일
개구부의 방화설비	방화문(항시개방 또는 연기 감지 연동 폐쇄)	특정방화설비인 방화문(항 시개방 또는 연기감지연동 폐쇄 또는 개방부분의 4㎡ 이내의 철망유리 설치된 창문)
한 구획의 바닥면적	100㎡ 이하	200㎡ 이하
한구획의 거실수	3이하	제한없음

48

グループホーム火災に対する消防庁の 行政施策(231号通知)平成19年(2007年)6月

- 避難所要時間が避難限界時間以内ならスプリンクラー設備の設置を免除
- 避難所要時間は避難安全検証法をベースに新たに作成
- 避難限界時間や延長時間は福祉施設避難マニュアルの考え方を踏襲
- 避難安全検証法的手法でスプリンクラー設備の設置を免除する初の判断
- 今後予想される新たな形態の病院や福祉施設の防火安全対策を考える場合の参考として重視

49

그룹홈화재에 대한 소방청의 행정시책(231호 통지) 2007년 6월

- 피난소요시간이 피난한계시간 이내이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
- 피난소요시간은 피난안전검증법을 베이스로 새롭게 작성
- 피난한계시간 및 연장시간은 복지시설피난매뉴얼을 답습
- 피난안전검증법적 방법으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는 최초의 판단
-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병원 및 복지시설의 방화 안전대책을 고려할 경우 참고자료로 중시

50

避難限界時間

- 避難限界時間 = 基準時間 + 延長時間
- 基準時間; 火災室が盛期火災に至る算定上の時間

算 定 項 目			基準時間
共 通			2分
加 算 条 件	壁及び天井の室内に面 する部分の仕上げ	不燃材料	3分
		準不燃材料	2分
		難燃材料	1分
	寝具・布張り家具の防災性能の確保		1分

51

피난한계시간

- 피난한계시간 = 기준시간 + 연장시간
- 기준시간; 화재실이 성기화재로 발전하는 산정상의 시간

산정 항목			기준시간
공통			2분
가 산 조 건	벽 및 천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	불연재료	3분
		준불연재료	2분
		난연재료	1분
	침구·천으로 마감된 가구의 방염성능의 확보		1분

52